

의안번호	제 27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0월 08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271 호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0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매년 늘어나는 건강검진 수요에 맞춰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검진 센터를 개·보수하고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형 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하며, 의료원 별관동 3층 사무실을 개조한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노후되고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증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조령산자연휴양림은 1993년 조성한 초창기 휴양림으로 당시 건축한 통나무집 형태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우려 및 시설물 운영관리 어려움으로 이를 개축하여 특색 있는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며
-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19년~22년 500ha)매입하려함
- 을량119안전센터 청사의 협소함 및 노후화,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장비 조작 및 전술훈련이 어려움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옥산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센터로의 승격 및 옥산면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옥산119지역대(면사무소 내 위치)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청주의료원 내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2년)
- 규 모 : 4,781.04m²(증축 4,199.42m², 개·보수 581.62m²)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50%, 도비50%)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번지
- 사업기간 : 2020. 1. ~ 12.
- 규 모 : 16동 514m²
- 사 업 비 : 3,300백만원(균특50%, 도비50%)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 위 치 :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2-1 외 21필지
- 사업기간 : 2020. 1. ~ 12.
- 규 모 : 112ha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100%)

《울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2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0. ~ 2021.
- 신축규모 : 1,000m²(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543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1.
- 신축규모 : 990m²(1개동, 지상3층), 부지면적 2,000m²
- 사 업 비 : 2,530백만원(도비 100%)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	1,120,061	3,000,000				
	건물	4	7,285.04	18,372,657				
	기타							
1	토지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1	785,766	1,014,831	2020	도유림 확대조성	이남주 외 2	매입
		괴산군 소수면 수리 산20	312,595	610,277	"	"	윤창호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산4-2	5,170	186,339	"	"	고건필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0	344	28,930	"	"	이규창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2	1,128	98,251	"	"	지병권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7-4	346	35,334	"	"	여형준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9	769	66,982	"	"	김옥녀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1	1,228	103,273	"	"	손성배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3	1,231	135,323	"	"	지병권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4	1,228	191,793	"	"	한의남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56-1	2,479	148,915	"	"	홍삼숙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0-2	377	17,664	"	"	홍의범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2-1	982	44,832	"	"	홍의범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4-3	546	23,943	"	"	김홍순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6	466	17,636	"	"	오진석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9	228	8,902	"	"	오진석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10	2,727	111,392	"	"	김용예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70-1	172	8,266	"	"	서수남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70-3	264	12,370	"	"	서수남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1	1,651	104,135	"	"	고건필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2	40	3,364	"	"	여형준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3	324	27,248	"	"	고건필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2	토지							
	건물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청주의료원 부지 내)	4,781.04	10,000,000	2021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	증축
	기타							
3	토지							
	건물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	514	3,300,000	2020	조령산자연휴양림 개축	충청북도	개축
	기타							
4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2(밀레니엄타운 내)	1,000	2,542,583	2021	울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	신축
	기타							
5	토지							
	건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	990	2,530,074	2021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	신축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